

의안번호	제2905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5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임 조례 및 사회통념 상
알 수 있는 용어으로써 삭제함.

다. 제2조에서 사용한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조에서 재약칭함
(안 제3조·제4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고성
군수”의 약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214호(2025. 1. 14.)]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32호

가) 예고기간: 2025. 1. 20. ~ 2. 1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2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
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
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심 의 요 구 서 (제11조제2항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번호	신 청 인		기 탁 금품액	기 탁 관 서	기 탁 목 적	비고
	주 소	성 명				
		(남/여)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 의 요 구 서 (제11조제2항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번호	신 청 인		기 탁 금품액	기 탁 관 서	기 탁 목 적	비고
	주 소	성 명				
		(남/여)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재무과장 오 은 겸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30.>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문

○법률 제20154호(일부개정 2024. 1. 30., 시행 2024. 7. 3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